

남명 장학금 지급 내규

2015. 3. 제정

2017. 5. 개정
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에 기탁된 남명장학금의 지급과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장학생 선정기준)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의 당해 학기 등록생으로 12학점 이상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.

1.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 모범이 되는 자
2.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
3.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 이상인 자

제 3 조 (장학금 지급기간) 장학금 지급기간은 한 학기로 하며, 학기별로 지급한다.

제 4 조 (장학금액 및 지급인원) 장학금액은 최대 등록금 전액으로 하며, 국가장학금 또는 타 장학금 지원을 받는 경우 나머지 등록금에 한한다. 지급 인원은 매 학기 1인 이내로 정한다.

제 5 조 (장학생 선발절차) 장학생 선발은 제 2 조에 해당되는 지원자 중에서 통계학과장이 추천하여 통계학과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.

제 6 조 (신청서류) 장학생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학금 신청서 1부
2. 성적증명서 1부
3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4.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(부·모) 1부

제 7 조 (장학금 지급방법) 학생지원부에 선발자 명단을 송부하고, 장학금을 매학기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2조, 제4조, 제5조 개정, 제8조

삭제)